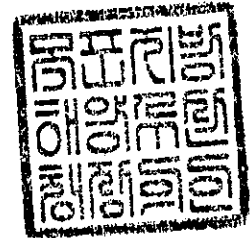


중선운항관리규정

나 폴 리 호

(주)남해고속



종 선 운 항 관 리 규 정

기항지명 : 흑산면 상대도 연안

사 업 자	(주)남해고속		대 표 자	성기순	생년월일	1941.09.25
여 객 선	선 명	남해퀵	321 톤	항 로	목포-홍도-가거도	
		남해엔젤	319 톤			
		핑크돌핀	223 톤			
		뉴 퀵	254 톤			
선 박 제 원	종선명	나폴리호		장×폭×심	10.50m×3.40m×0.98m	
	총톤수	7.31		기관종류 및 마력	디젤 220 kW × 1기	
	선 질	FRP		통신장비	0	
	선 종	기선		진수일자	199212.01	
	최대승선 인 원	총 12명 (여객 : 11명, 선원 : 1명)				
운 항 계 획	운항거리	최소=200m / 최대=500m		선 장	김 치 환	
	운항회수	1일 편도 2회		운 항 통제관	-	
	운항시간	1편도=5~10분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선운항관리규정을 제출합니다.

2021년 03월 31일

제출자 성 기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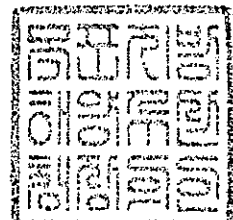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귀하가 제출한 종선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고 이를 승인합니다.

2021년 04월 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인)



첨부서류 : 종선운항관리규정

종선 운항관리규정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

제출자	업체명 주) 남해고속		사업자등록번호 411-81-02115
	소재지	본사 : 목포시 해안로 182번지.	본사 전화번호 : 061-244-9915
		지사 :	지사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 성 기순		생년월일 : 1941. 09. 25

사업의 개요	선박 명세	선 명	나폴리호	선박번호	어선번호 : 19508036- 6497100
		선 중	어선	총톤수	7.31 G/T
		여객정원	12 명	평균속력(노트)	노트
	항로	기점항	상/중태도	종점항	상/중태도
		기항지 수	0 개소	항로거리	500 Mtr's
		운항시간	5 분		
	운항 계획	출항시간			
		회항시간			
		운항횟수			

「해운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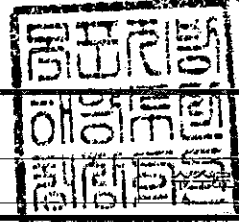
2021 년 03월 31일

제출자

주) 남해고속 대표이사 성 기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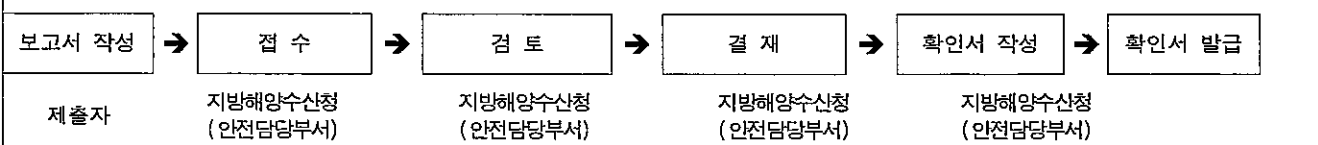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운항관리규정	: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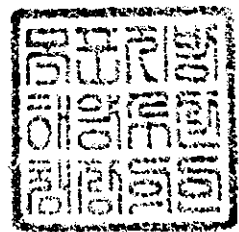
처리절차



개 정 이 력

나폴리호 (상태도 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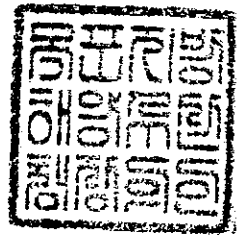
개정일자	개정항목	변경전	변경내용	변경사유
2018.05.31.	운항관리표지	남해프린스호	삭제	항로변경
“	제8조 2항	운항관리센타247-9466	247-9457/9458	수정
“	“		목포해양경찰서상황실 (122/119)	누락, 추가함
2018.06.06	제2조1항	종선운항통제관	삭제	선임되어있지않음
“	제8조 2항	247-9457	247-9466	확인유지
2020.07.03	[별지 제8호 서식]	선명 : 남해스타, 남해퀵, 남해엔젤, 핑크돌핀	선명 : 남해퀵, 남해엔젤, 핑크돌핀, 뉴퀵으로 변경	남해스타호 말소 뉴퀵호 신규투입
2021.3.31	제 8 조 : 유사시 긴급보고 체계에 관한사항	비상연락체제에 의한 연락(선조치 후 보고) (종선) - - 삭제	본선 (쾌속선) 【비상상황 연락기관】 으로 일치되게 변경	【비상상황 연락 기관】 : 본선과 일치



중선운항관리규정

나 폴 리 호

(주)남해고속



선 운 항 관 리 규 정

제 1 조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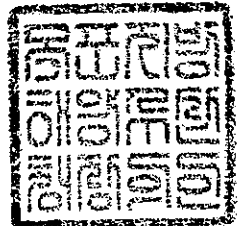
이 규정은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여객선 (이하 “본선”이라 한다)이 직접 접안할 수 없는 기항지에서 본선과 육지간 여객의 중계운송에 이용하고 있는 종선“나폴리호”의 안전운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선박 운항기준

- ① 종선선장은 출항 전 또는 운항 중 현지 기상상태가 악화되어 종선운항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또는 대리점)에 통보하고 기항지 여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본선선장은 운항 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종선운항이 불가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또는 대리점)와 협의하여 기항지 여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운항통제기준 : 초쾌속선과 동일

제 3 조 : 운항항로(별첨)

- ① 운항구간 : 흑산면 상태도리항으로부터 약 1km(접선반경 약 500미터) 단, 부득이한 경우 본선에서 요청하는 지점에서 접안할 수 있다.
- ② 운항거리 : 500m이내
- ③ 운항시간 : 5~10분 이내
- ④ 항로수심 : 3m~30m
- ⑤ 항해장애물 : 없음.



제 4 조 : 여객 승·하선 (본선과의 견현 높이차 30Cm이내)

- ① 여객의 승하선시는 종선선장 및 본선선원 입회하에 안전하고 질서있게 승하 선 하도록 한다.
- ② 여객은 정원범위 안에서 승선할 수 있으며 승선인원은 본선선장이 확인하고 통제한다.
- ③ 여객은 승선 즉시 지정된 장소에 착석하도록 한다(여객배치도 별첨)
- ④ 여객의 승하선은 지정된 선착장을 이용한다.
- ⑤ 종선선장은 출항 전에 여객에게 구명조끼 보관장소 및 착용법을 설명하여야 하고 운항구간의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한다.
- ⑥ 종선선장 및 본선선장은 종선의 안전성 및 복원성을 감안하여 정원승선 또는 적량화물을 적재토록 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최상의 상태임을 확인하고 운항 하도록 한다.(위험물 적재금지)

제 5 조 : 선박운항

① 출항 준비사항

종선선장은 출항 전 점검을 철저히 시행 후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최상의 상태임을 확인하고 운항하도록 한다.

② 운항종료 후 선박행동 및 관리책임

1. 운항종료 후 상태도리항 선착장(석축부두)에 계류.
2. 종선안전관리 책임은 선주(선장)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3. 기상악화 시 또는 태풍접근 등에는 계류색을 증강하거나 흑산도항으로 피항 또는 선체를 육상으로 올리는 등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6 조 : 운항관리

① 여객정원 통제에 관한 사항

1. 정원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차례 증회 운항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여객정원만이 승선 했을지라도 여객 휴대화물의 적재에 따른 복원성을 감안하여 승선인원을 적절히 감원 승선 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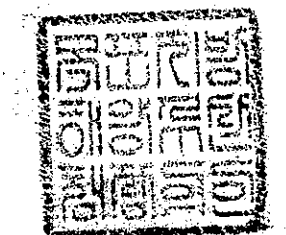
② 출항 전 점검은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13조제1항(별지제9호서식)에 의거 선장이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선박회사 및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보고 하여야 하며 시정보완 조치 후 출항에 임해야 한다.

③ 종선 운항 중 선장 임무에 관한 사항

1. 종선선장은 본선 선장과의 상호안전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종선선장은 종선에 특이사항 발생 시는 지체 없이 본선 선장 및 목포운항관리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종선선장은 여객의 승하선시 및 종선 운항 중에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수송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객선안전관리지침에 따른다.

제 7 조 : 종선 정비 및 점검

- ① 종선선장은 법정검사 시 철저한 정비 후 선박검사원의 검사를 필하고 운항한다.
- ② 안전시설,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은 출항 전 점검하고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③ 사업자는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13조제2항(별지제10호서식)에 의거 월1회 이상 종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보고서를 목포운항관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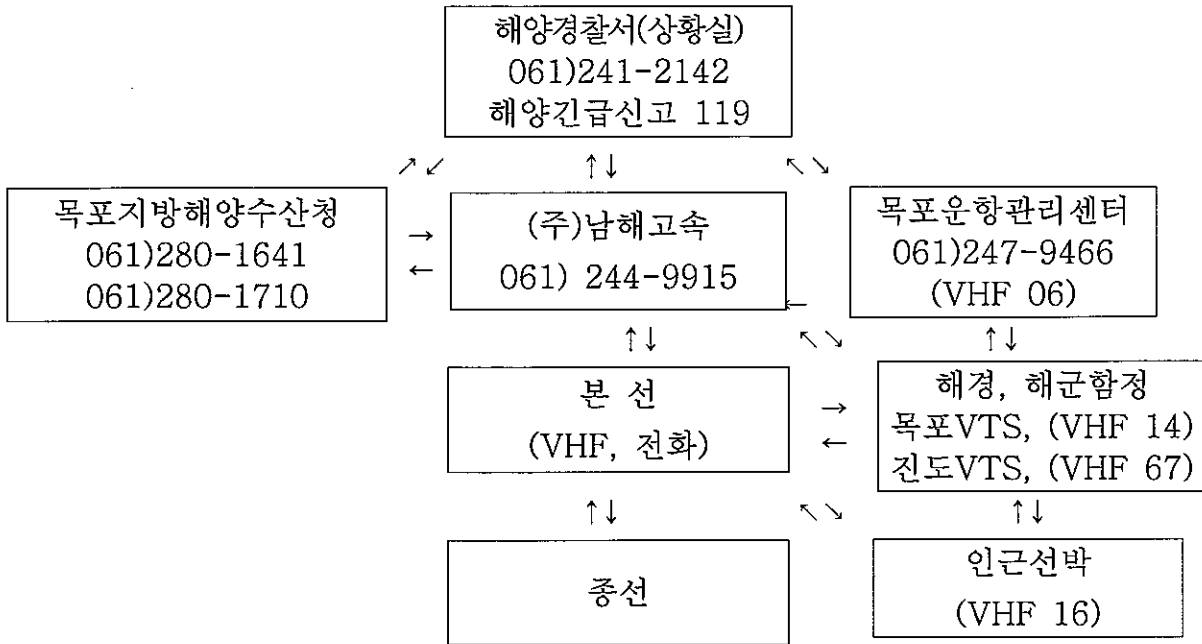


제 8 조 : 유사시 긴급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해양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시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2. 비상연락체제에 의한 연락(선조치 후 보고)

【비상상황 연락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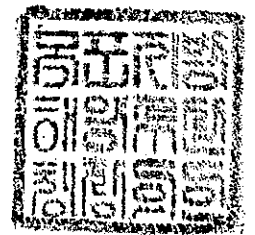
3. 비상시 종선과 본선과의 연락은 통신기(VHF)와 휴대전화 등으로 한다.
4. 현장보존 및 관계기관에 통보
5. 사고내용 및 원인 등의 조사 기록유지
6. 피해보상 기타 필요한 사항

제 9 조 : 기타 사항

- ① 종선운항관리규정을 종선 및 본선에 비치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동” 사본을 종선에 비치할 수 있다.
- ②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의한다.

붙 임 :

- ① 운항항로
- ② 여객배치도
- ③ 어선특별검사증서
- ④ 어선검사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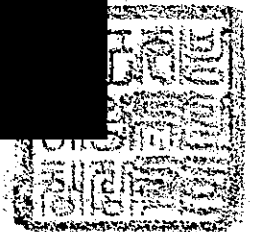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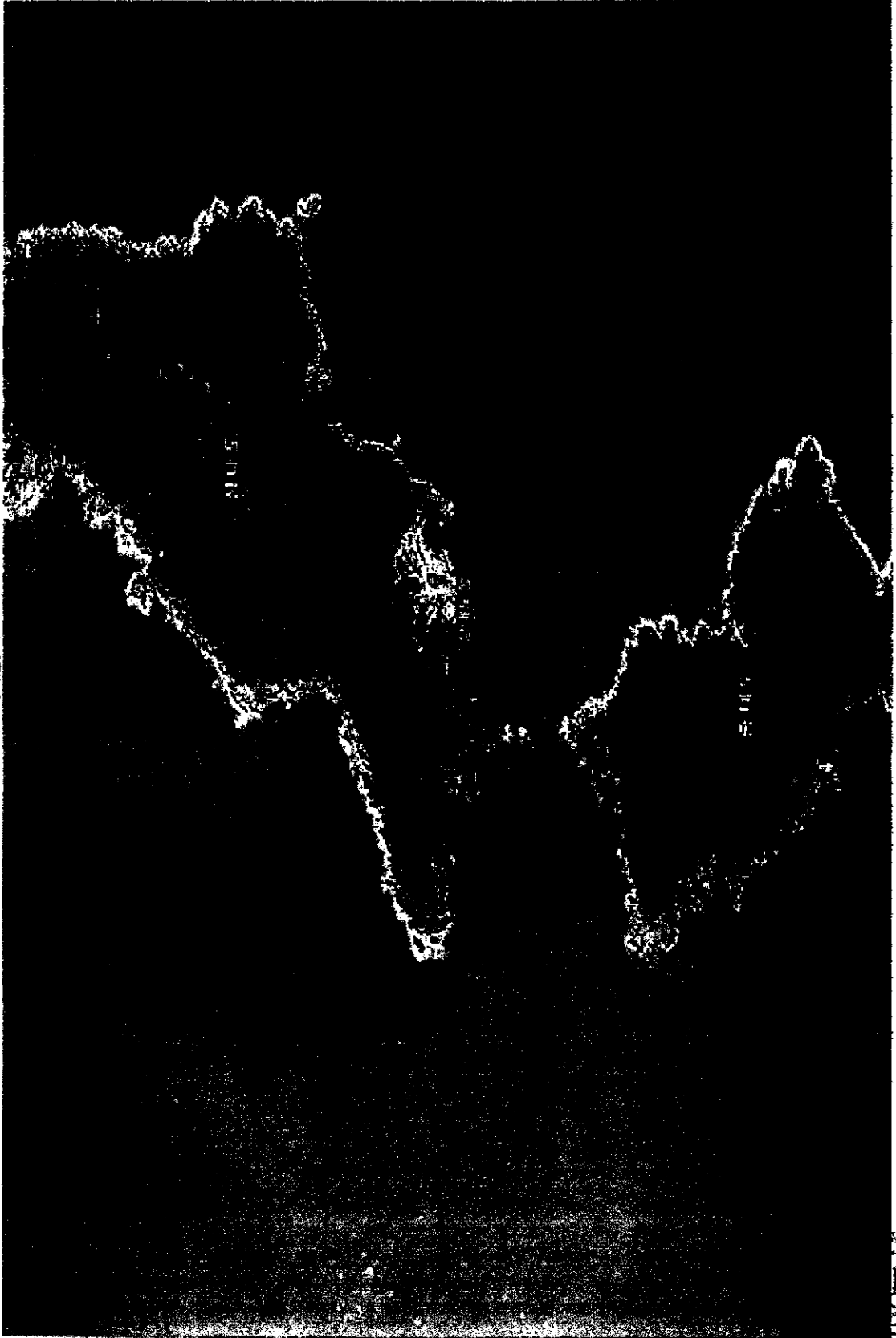


[별첨1] ① 운항항로

[별첨 1] 운항항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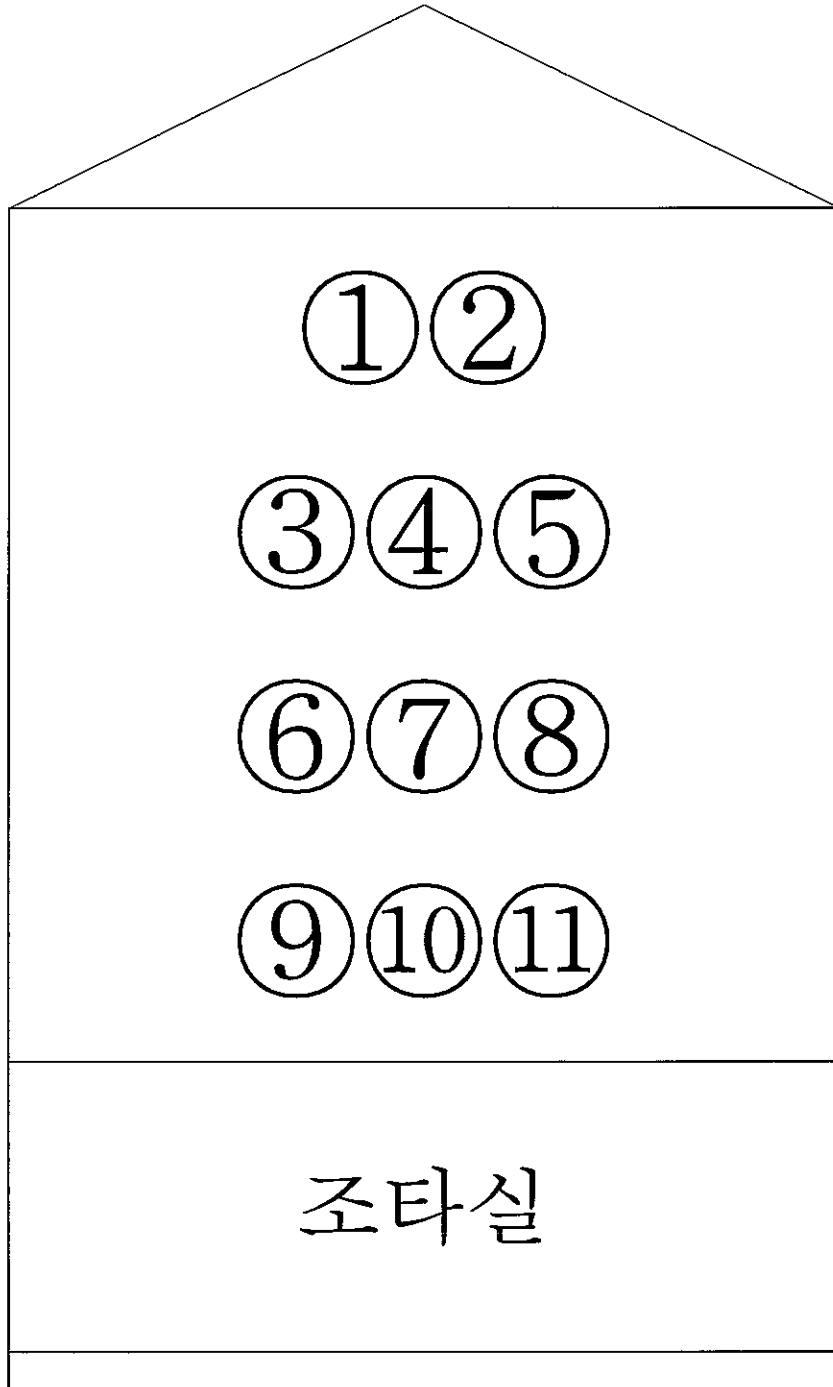
○ 기항지명 : 육산면 상태도

○ 종신명 : 나폴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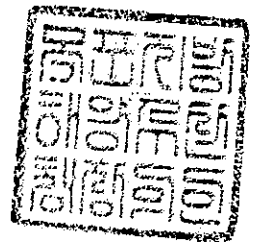


[별첨2]

여객배치도



종선명 : 나폴리호



3. 어선검사증서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어선검사증서
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

제 MP-1/-19828 호
Certificate N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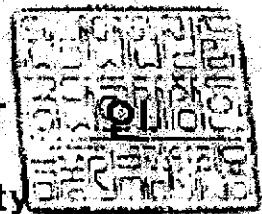
이전의 명칭 Name of Ship	나폴리호	어선번호 Official Number	9508036-6497100
선질 Ship's Material	FRP	총톤수 Gross Tonnage	9.75 톤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어선(어장관리선)		
추진기관 Main Engine	디젤기관	220 [kW] 300 [PS]	
배의 길이 Ship's Length	10.90 미터	Type Output	Number of U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Total 12 Crew 12 명, P. 0 (Other Personnel: P) 0 명)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출발 전 안전검사를 받고, 제65조제1항(제65조제4)에 따라 후부터 (전까지)항행을 금지함.		
유효기간 Validity	2015년 07월 25일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2020년 07월 25일 까지 unt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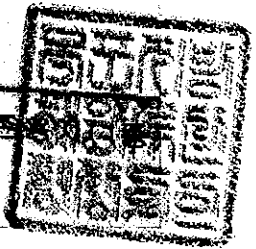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7년 10월 30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210mm x 297mm [보통]



4. 어선특별검사증서

어선법 시행규칙 [제 63조 제 1항]

어선특별검사증서
FISHING VESSEL SPECIAL SURVEY CERTIFICATE

MF-17-19930 호
Certificate No.: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나폴리호	어선번호 Official Number	9508036-6497100		
선질 Ship's Material	FRP	총톤수 Gross Tonnage	5.75 톤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어선(어장관리선)				
추진기관 Main Engine	디젤기관	기관 Type	220 [kW] Output	300 [PS] [PS]	1대 대 Number of Units
배의 길이 Ship's Length	10.50 미터	무선설비 Equipment	무선전화		
승선인원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Total 12	1인 P.	사람 : 11인 Personnel: 11 P)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Issu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선... (중략) ...이 하선하는 경우)로부터 - 목... (중략) ...사용 금지 - 기... (중략) ...관련한 조건은 어선특별검사증서 참조 				
유효기간 Validity	2017년 10월 10일 10월 31일까지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7년 10월 30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210mm x 297mm (보통용)